

[의정부] 2023년 공무원 결원대체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

통계청 의정부사무소에서는 공무원 결원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3. 9. 25.
통계청 의정부사무소장

1 채용인원 및 채용기간

지역	채용 구분	채용 인원	계약 방법	채 용 기 간	수당
의정부	기간제 근로자	1명	근로 계약	2023. 10. 12. (목) ~ 12. 12. (화)	일 급: 69,230원 표본관리비: 150,000원/월 정액급식비: 140,000원/월

- 1) 천재지변이나 통계기획 변경 등으로 변화가 있는 경우 기간이 축소되거나 조정될 수 있으며, **사무소 사정에 따라 최종 채용 인원 및 채용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**
- 2) 합격자가 포기할 경우 다음 차순위자 순으로 대체 채용할 수 있으며, 최종 심사 후 기간제 근로자 자질에 적합한 채용인원 미달 시 조사원 DB를 활용하여 채용인원을 확보하며, 부적합한 지원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
- 3)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사 및 복무에 관한 내용은 「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」(통계청 훈령 제629호, 2023. 6. 22. 개정)에 근거하여 운영
- 4) 근무지: 통계청 의정부사무소(경기도 의정부시 체육로 298-7 크로바프라자 6층)

2 담당업무

담당업무	주요담당업무
기간제 근로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가구부문 현장조사 업무수행○ 방문조사 및 조사표 작성○ 조사한 조사표류 내용검토 및 시스템 입력○ 기타 조사 관련 지시사항 처리 등

3**채용방법**

□ 1차전형(서류심사, 100점)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

□ 2차전형(면접심사, 100점)

-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
- 통계분야에 대한 지식, 의욕적인 자세 등 종합적으로 평가

□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

- 2차 면접심사 점수가 높은 자
- 2차 면접점수가 동점일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 결정
-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채용권자가 업무적격자 결정

□ 취업지원 대상자(국가유공자 등) 가점*기간제 근로자 채용 1차 및 2차 전형 중복 적용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및 제31조,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 20조 및 제22조에 따른 가점 부여

5점	10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 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.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-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.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배우자 -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-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.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-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.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-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.18민주화운동 희생자 - 5.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

* 보훈(지)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에 의해 가점대상 및 비율 확인
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제24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에 따른 가점 부여

5점	10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배우자 -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-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 -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-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-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

* 보훈(지)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에 의해 가점대상 및 비율 확인

4 응시 자격요건(모두 충족)

-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
- 의정부사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
- 이중계약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
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장애인 우대
-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, 북한이탈주민 우대
 - ※ 저소득층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
 - ※ 다자녀보육가구: 20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는 가구
 - ※ 북한이탈주민: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부여
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
- 최근 3년간 통계청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
- 최근 2년간 통계청 계약기간중 중도포기 이력이 없는 자

5

전형일정

-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: 2023. 10. 6.(금) 10:00 (예정)
 - 통계청 홈페이지 채용정보 (<https://kostat.go.kr/ijob>)에 공고
 - 2차 면접전형: 2023. 10. 10.(화) 11:30 ~ (예정)
 - 장소: 통계청 의정부사무소 6층 회의실
 - 최종합격자 발표: 2023. 10. 11.(목) 17:00 이후(예정)
 - 통계청 홈페이지 채용정보 (<https://kostat.go.kr/ijob>)에 공고
- *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

6

지원서 접수

- 접수기간: 2023. 9. 25.(월) ~ 10. 4.(수) 18:00까지
 - 접수방법: 방문, 우편, 이메일 접수(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)
 - 방문접수시간: 평일 09:00~18:00(토·일·공휴일 제외)
 - 증빙서류는 팩스 또는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 가능
 -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
- * 응시원서 등 제출 후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접수처

기관명	담당자	주소	연락처
통계청 의정부사무소	문정선	경기도 의정부시 체육로 298-7, 6층 (녹양동, 크로바프라자)	(전화) 031-860-3569 (팩스) 031-876-0600 (이메일) bemine21@korea.kr

7

제출서류

- 응시원서 1부[붙임1]
- 채용 전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[붙임2]
- 자격증명서 사본 1부(해당자)
-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해당자)

-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, 북한이탈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해당자)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(해당자)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(행정정보공동이용 포털 이용 동의시)
 -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자는 [붙임3]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후 제출
 -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포탈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: 국가기술자격증(대한상공회의소),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, 국가유공자(유족)확인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장애인증명서, 주민등록등초본, 취업지원대상자증명, 한부모가족증명서
-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1부(최종합격 시 제출)
 - ※ 응시자가 제출한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80일이며, 반환 청구시에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반환(단, 채용이 확정된 자 및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채용서류 제출한 자는 제외)

8. 유의사항

- 응시원서 등에 거짓 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
-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
-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함

